



## ■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) 내부청소 안내

-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「하수도법」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
## ■ 청소대상

- 내부청소를 실시한 지 1년이 경과한 개인하수처리시설

## ■ 내부청소 시기

- 연 1회 이상(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, 이전 청소일 기준으로 1년 이내)

## ■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이유

-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특성 상 침전오니·스컴·찌꺼기 등이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을 경우 미생물 활성화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오수 및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해당시설의 적정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.

## ■ 정화조 청소 업체 현황

업체명	소재지	연락처	비고
남경미화사	학산면 장정길 7	473-9600	